

음식점 등 가격 표시제 시행 안내



1 모든 식품접객업소 "최종지불 가격"으로 표시('13.1.1일자)

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(위탁급식영업은 제외)에서는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,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할 수 없으며, 이를 음식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하는 "최종지불가격"으로 표시

▶ 위반 시 : 1차(시정명령), 2차(영업정지 7일), 3차(영업정지 15일)

기 존	변 경
OO음료 ... 10,000원 ※ 봉사료 10%, 부가가치세 10% 별도 OO요리 ... 20,000원 ※ 봉사료 10%, 부가가치세 10% 별도	2013.1.1부터 ⇒ OO음료 ... 12,000원 OO요리 ... 24,000원

2 불고기, 갈비 등 식육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('13.1.1일자)

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가격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,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 가능.

▶ 위반 시 : 1차(시정명령), 2차(영업정지 7일), 3차(영업정지 15일)

기 존	변 경
갈비 1인분 180g ... 18,000원 등심 1인분 150g ... 33,000원	2013.1.1부터 ⇒ 갈비 100g ... 10,000원 (1인분 180g ... 18,000원) 등심 100g ... 22,000원 (1인분 150g ... 33,000원)

◆ 식육 중량 표시 적용범위(예시)

- 생고기(소고기, 돼지고기 등)를 구워먹는 경우
- 양념된 갈비, 불고기 등 손님이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
- 요리(샤브샤브 및 닭갈비 등)의 고기 추가 주문 시 추가 제공되는 고기
- 애벌(훈제 등)구이 된 고기를 다시 조리해 먹는 경우
 - ※ 적용제외 되는 사례
 - ① 탕, 찜, 찌개, 보쌈, 족발(닭발), 육회, 스테이크, 돈까스, 바베큐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 제외
 - ② 샤브샤브, 닭갈비 등 야채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품목 제외(단, 추가고기는 표시대상)
 - ③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, 오리 등은 제외

◆ 가격표시 : "십원 단위"로 표기(원단위 이하 절사)

음식점 등 가격 표시제 시행 안내

3 음식점 「옥외가격 표시제」 시행('13.1.31일자)

신고 면적이 150㎡(45평)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의 최종지불가격 표시

▶ 집중홍보-계도 : 3개월(4. 30일까지)

▶ 위반 시(5.1부터) : 1차(시정명령), 2차(영업정지 7일), 3차(영업정지 15일)

◆ 대상업소

- 신고 면적이 150㎡(45평) 이상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
※ 단란주점, 유흥주점, 제과점은 제외

◆ 게시 품목 수

- 주요 항목 5가지 이상, 취급메뉴 5가지 미만일 경우 전 품목 표기

◆ 규격 및 표기방법(※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규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게시)

※ 규격 및 세부 표기 방법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중임

※ 디자인 등 최종 표시요령은 향후 홈페이지 등에 게시 예정

◆ 게시위치 및 방법

- 업소에 입장하기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 게시
- 출입문 주변, 창문, 외벽면, 집합건물의 1층 로비·승강기 입구 등 활용

※ 실외 입간판·베너(이젤 포함)·현수막 형태로 게시는 불가
⇒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

◆ 표시대상 가격

- 부가가치세, 봉사료 등 포함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

| 문의전화 |

- 서울시(120다산콜센터, 식품안전과 : 6361-3869)

- 자치구 위생부서

